

유럽의 아메리카 식민 지배 과정에서 나타난 원주민 관련 법제 연구 - 스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

김 봉 철** · 임 소 라*** · 양 수 영***** · 박 철 용*****

〈국문초록〉

스페인은 15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면서 원주민을 지배하고 수탈하기 시작하였다. 스페인 왕국에서는 피지배 계층으로 전락한 원주민의 처우를 고민하였는데, 당시 스페인 왕국은 원주민에 대한 인식과 규율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이는 명목상 원주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페인 본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서는 이 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원주민은 법의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계속 사회적 약자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 지배가 본격화되었던 16세기 당시 원주민에 대한 논의 및 이에 근거한 스페인의 법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원주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바야돌리드 논쟁(Valladolid debate)’을 통해서 당시 스페인과 라틴아메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9S1A6A3A02058027/NRF-2022S1A5C2A02091292)이며, 202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주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bong625@hufs.ac.kr)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교수(angelalim@hufs.ac.kr)

**** 공동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스페인어문학과 박사수료(202132042@hufs.ac.kr)

***** 공동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학부생(kbg06096@hufs.ac.kr)

리카의 관계, 원주민의 상황과 처우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원주민 법률의 합본인 『스페인의 원주민 제도에 관한 법전(*Recopilación de Leyes de las Indias*, 1680)』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스페인의 원주민과 관련된 법제가 원주민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를 통해 스페인의 식민 정책과 제도에 인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영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법, 바야돌리드 논쟁

차 례

I. 들어가는 글	III. 바야돌리드 논쟁 이후 스페인의
II.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 지배와 원주민 관련 문제	아메리카 원주민에 관한 법제
	IV. 나가는 글

I. 들어가는 글

유럽은 15세기부터 아메리카 대륙을 대상으로 식민 지배를 시작하였다. 이 시기부터 유럽인들은 원주민의 언어, 종교, 역사, 문화를 파괴하고, 이들의 재산, 토지, 노동력 등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탈하였다. 식민지 독립 이후에도 원주민은 아메리카 내에서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으로 전락하였는데,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원주민의 인권과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국제적인 논제가 되고 있으며,¹⁾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자신의 인권 보호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현재까지 투쟁하고 있다.

당시 유럽의 식민 지배를 주도하였던 대표적 국가인 스페인은, 식민지 엘리트들의 충성심 확보와 유지를 위한 아우디엔시아(Audiencia)와 코레히도르

1) 김봉철·임소라·양수영·박철용, 「라틴아메리카 식민정책과 근대 조약: 1750년 마드리드 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EU연구』, 65, (2023), 235-236쪽.

(Corregidor) 등을 통해 지배 계층을 위한 정치 기구를 도입하였다. 한편 스페인 왕실은 자신들의 식민 지배와 동시에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한 원주민들의 처우 역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스페인 왕국은 원주민에 대한 인식과 규율을 위한 법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명목상 원주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페인 본토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서는 이 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요컨대, 스페인 식민 지배 하의 원주민은 법의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약자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 지배가 본격화되었던 16세기 이후 원주민에 대한 논의와 관련 스페인 법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의 시작점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피부색에 따른 사회계층의 형성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원주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바야돌리드 논쟁(Valladolid debate)’을 통해서 당시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 원주민의 상황과 처우에 관하여 확인한다. 특히 원주민 법률 합본인 『스페인의 원주민 제도에 관한 법전(*Recopilación de Leyes de las Indias*, 1680)』을 분석하고, 당시 스페인의 원주민과 관련된 법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고찰함으로써 당시 원주민 관련 법제와 현실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주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건들을 분석하는 것이었으나, 이 연구는 이전 연구와 달리 법제 자체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스페인의 식민 지배 정책과 제도에 투영된 인종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법 제정을 통한 스페인의 문제 해결 노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 연구 결과는 식민 지배로부터 비롯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인종 불평등의 구조가 법제화를 통하여 개선되지 못한 채 현대 사회까지 이어진 원인과 최근 법제의 대응 및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 지배와 원주민 관련 문제

1. 스페인의 식민 지배로 인한 아메리카 사회의 계층 문제

16세기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인종에 따른 사회 계층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림-1>에 따르면, 당시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는 크게 ‘페닌슐라르(Peninsular)’, ‘크리오요(criollo)’, ‘메스티소(mestizo)’, ‘원주민’, ‘아프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노예들’로 계급이 구성되었다.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태어난 백인은 페닌슐라르라 분류되어 피라미드 계급 가장 상위에 위치하였으며, 스페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식민지인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은 크리오요라고 불렸다. 크리오요들은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들을 부리며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직접적으로 지배하였다.

<그림-1> 식민 당시 라틴아메리카 사회계급도²⁾



출처: <https://bullisglobalhistoryspain.weebly.com/>

2) JOY STEWART, NAYA HUTCHINSON, CAMMIE HONESTY, SARAH DELEONIBUS, "SPAIN IN THE NEW WORLD"
<https://bullisglobalhistoryspain.weebly.com/> (검색일: 2023. 6. 25).

식민 초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대부분의 피지배 계급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주민의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대신할 아프리카와 캐리비안에서 흑인 노예들이 아메리카로 유입되었다. 식민 초기에 들어온 유럽 이민자 대부분은 30세 미만의 백인 남성 노동력으로, 이들과 원주민 혹은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페닌슐라르와 크리오요의 다음으로는 흑인과 원주민 외에도 메스티소(백인과 인디오의 혼혈), 몰라토(Mulato, 흑인과 백인 또는 흑인과 원주민과의 혼혈), 삼보(Sambo, 흑인과 원주민 혼혈) 등의 혼혈인들이 등장하면서 식민지의 새로운 피지배 계층을 형성하였다.

백인인 페닌슐라르와 크리오요 사이의 균열도 존재했는데, 이러한 균열은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이후 독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6세기 중엽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 초기부터 스페인 본토의 백인들은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크리오요들을 견제하여 주요 관직에서 배제하였다. 1678년부터 1750년까지 아우디엔시아(Audiencia)³⁾ 관직의 44%가 크리오요로 채워졌기 때문에,⁴⁾ 스페인은 이러한 상황이 통치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하여 크리오요가 차지하고 있던 관직을 페닌슐라르로 교체하였고, 이들로 하여금 유럽 국가와의 무역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크리오요들은 점차 식민지에서 경제적 부는 획득하더라도 실제 국가의 중요한 위치나 인물은 되지 못한 채 본토 출신인 페닌슐라르의 그늘에 머물게 되었다. 이는 페닌슐라르에 대해 크리오요들이 반감을 지니게 되는 계기로 이어지게 된다.⁵⁾

페닌슐라르에게 주어진 특혜는 크리오요와 페닌슐라르 사이의 균열을 가

3) 아우디엔시아(Audiencia)는 스페인이 식민지 통치를 위해 현지에 설치한 고등사법 재판소 및 관구명을 뜻하며,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행정권과 약간의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WORDROW, “아우디엔시아”

<https://wordrow.kr/%EC%9D%98%EB%AF%B8/%EC%95%84%EC%9A%B0%EB%94%94%EC%97%94%EC%8B%9C%EC%95%84/> (검색일: 2023. 6. 24).

4) 스페인은 17세기에 들어 극도의 재정난을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여러 관직을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하면서 크리오요의 입지가 커졌다. 이강혁, 『라틴아메리카역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2008), 157쪽.

5) 이강혁, 같은 책, 157쪽.

져왔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크리오요가 공적인 자리에서 페닌술라르를 비판하는 행동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당시 아메리카 태생의 최초의 여성 신학자로 알려진 후아나 데 아스바헤(Juana de Asbaje) 수녀가 포르투갈 신부 안토니오 비에이라(António Vieira)와 논쟁을 벌인 일로 종교재판에 회부되었고, 이후 후아나 데 아스바헤 수녀는 학문 연구가 금지되기도 하였다. 페닌술라르들의 자녀라 하더라도 식민지에서 태어날 경우 같은 스페인 국민이지만 크리오요로 취급되어 차별을 받았고, 이렇게 증폭된 사회적 불만은 결국 스페인 본국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독립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⁶⁾

시간이 흐르면서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에서의 광물이 고갈되고, 영국이 주요 무역을 주도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19세기 초에는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을 침략하면서 나폴레옹의 형인 조세프 보나파르트(Joseph-Napoléon Bonaparte)가 스페인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아메리카에서의 페닌술라르들의 권위도 추락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크리오요들은 스페인에 대항하여 성공적으로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후 스페인이 19세기 말 쿠바를 상실하게 되면서 아메리카에서의 페닌술라르 계급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이 사회적 계층의 변화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⁷⁾

2.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 지배와 원주민 취급에 대한 논쟁 그리고 법제화

스페인의 ‘원주민 법’은 ‘신대륙의 발견자’ 콜럼버스(크리스토팔 콜론, Christopher Columbus or Cristóbal Colón)가 아메리카 대륙에 접근하는 항해를 위해서 1492년 팔로스 항구(Puerto de Palos)를 떠나기 전에도 존재하였다. 그

6) 이강혁, 같은 책, 156-157쪽.

7) 독립국의 지배층이 페닌술라르에서 크리오요로 바뀌었을 뿐, 원주민, 흑인, 원주민 혈통이 짙은 혼혈인은 여전히 사회적 계층의 아래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였고 현재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러나 당시의 원주민 법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아닌 기존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아프리카 연안의 카나리아 제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아메리카 도착 이후, 콜럼버스가 원주민을 노예로 삼으면서 이에 반발한 원주민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스페인의 요새를 파괴하고 스페인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원주민에 관한 법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습법과 공존하게 되었다.⁸⁾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엔코미엔다(encomienda)⁹⁾라는 제도를 기반으로 통치하였다. 엔코미엔다는 스페인어로 ‘위탁’, ‘위임’이라는 뜻으로, 식민 지배 초기에 엔코미엔다 제도의 핵심은 엔코멘테로(encomendero)¹⁰⁾라고 하는 스페인 통치자들에게 위탁하여 아메리카 지역을 통치하도록 하면서 본국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역할의 일부로서, 스페인은 엔코멘테로에게 아메리카 원주민을 보호하고 스페인어와 가톨릭을 전파하는 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점차 원주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정복 과정에서 유럽인들이 원주민들에게 행한 만행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쟁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안토니오 데 몬테시노스(Antonio de Montesinos)는 원주민을 옹호하는 일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으며, 왕실은 그를 프란시스코 수도사 알론소 에스피나르(Alonso Espinar)와 논쟁하게 하였다.¹¹⁾ 1512년 12월 27일 제정된 ‘부르고스 법’(Leyes de Burgos)은 그 논쟁의 결과물로, 스페인 정착민과 원주민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원주민에 영향을 주는 엔코미엔다 제도의 책임을 강화하여, 원주민들에 대한 폭력 및 폭언을 금지하였다.¹²⁾ 또한 원주민들이 스페인

8) Beatriz BERNAL GÓMEZ, “EL DERECHO INDIANO, CONCEPTO, CLASIFICACIÓN Y CARACTERÍSTICAS”, *Ciencia Jurídica*, Vol.4, No.2 (2015), p.184.

9) 김윤경, 「16세기 아스텍아 제국의 정치적 식민화: 변화인가 연속인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4.3 (2008), 9쪽.

10) 엔코멘테로들은 토착민의 보호와 그리스도교 전파를 근거로 원주민들에게 노동이나 생산물의 형태로 세금을 받고 노역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김윤경, 「16세기 아스텍아 제국」, 9쪽.

11) 이영민, 「16세기 남미선교와 바야돌리드(Valladolid) 논쟁의 선교적 도전과 과제」,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30쪽.

정착촌 근처에 마을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교적 가르침과 동시에 원주민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규정하였다.¹³⁾

그러나 원주민에 대한 스페인 본토의 이러한 논쟁과 법제가 원주민들의 삶과 노동 환경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하였다. 1514년에는 스페인 군주의 식민 지배를 최초로 합리화한 선언문(Menifesto)과 통고문(Requerimiento)이 발표되었다. 선언문에는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영토를 양도하지 않는 것으로 스페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¹⁴⁾ 한편, 통고문은 교황의 우월성과 원주민들이 스페인 왕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었다.¹⁵⁾

스페인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의 주교였던 라스 카사스(Bartolomé de las Casas)¹⁶⁾는 『서인도 제도의 파괴에 관한 약식 보고서(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를 강독하여, 핍박당하는 원주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참담한 현실을 카를로스 5세(Carlos V)에게 전하였다. 카를로스 5세와 서인도위원회는 1542년 11월 20일 ‘신법’(Las Nuevas Leyes)을 공포하였고, 원주민의 노예화를 정식으로 금지하여 원주민을 보호하려고 하였다.¹⁷⁾ 신법은 앞서 제정되었던 부르고스 법보다 더 상세하게 원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를 금

12) 나송주, 「착한 야만인에서 부패한 인디오로」, 『세계문화비교연구』, 8 (2003), 48쪽.

13) encyclopedia.com, “Burgos, Laws Of”

<https://www.encyclopedia.com/humanities/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and-maps/burgos-laws> (검색일: 2023. 6. 24).

14) 이영민, 「16세기 남미선교 도전과 과제」, 30쪽.

15) WORLD HISTORY ENCYCLOPEDIA, “Spanish Requirement”

https://www.worldhistory.org/Spanish_Requirement/ (검색일: 2023. 6. 24).

16) 라스 카사스 외에도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의 성직자들이 원주민 보호에 동참하였고 그 중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 사제는 최초로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의를 외친 인물이다. 그는 원주민들의 착취와 학대를 비판하며 국제법에 대한 사상을 전개하였고 그의 이론을 통해 국제법의 근대적 개념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전용갑·신정환·황순양·박영미, 『라틴아메리카 역사 산책. 올메카 문명에서 쿠바혁명까지』 (한국의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8), 191쪽.

17) 이영효,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스페인의 초기 인식과 태도」, 『역사학연구』, 31 (2007), 141-142쪽.

지하였고, 원주민을 광산에 보내어 진주 채취 노역을 강요하거나¹⁸⁾, 짐꾼으로 부리는 것 등 노예화와 강제 노역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았다. 또한 엔코멘테로들의 토지세습을 금지하고, 만약 원주민에게 일을 시킨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법에 포함되었다.¹⁹⁾

스페인과 식민지 사회를 아우르며 통합하려는 법제화는, 원주민들을 법적으로 스페인 백성과 동일하게 왕의 신민이 되도록 하고, 자신들의 관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²⁰⁾ 그러나 원주민과 왕권의 보호를 동시에 의도했던 신법은 엔코멘테로의 거친 저항으로 제대로 실행될 수 없었다.²¹⁾ 엔코멘테로들은 당시 카를로스 5세(Carlos V) 궁정의 목사였던 후안 히네스 데 세풀베다(Juan Ginés de Sepúlveda)를 자신들의 대변인으로 내세워 신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출하였다. 세풀베다는 라스 카사스의 『서인도 제도의 파괴에 관한 약식보고서』에 대한 답변으로 1547년에 『*Democrates secundus*』라는 저서를 통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빌려 원주민은 열등하고 비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적 노예 혹은 타고난 노예’(Esclavos por naturaleza)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법에 반대하였다.²²⁾

3. 바야돌리드 논쟁(Valladolid debate)과 평가

라스 카사스는 계속해서 엔코미엔다 상속 규정을 철폐한 신법의 정신을 강조하였고, 1547년 교구 사제들에게 고해성사에 필요한 고해성사 교본

18) Sánchez, Francisco, fl, “Leyes y ordenanzas nuevamente hechas por su Magestad, para la gouernacion de las Indias, y buen tratamiento, y conseruacion de los Indio”
https://books.google.co.kr/books?id=UmxjAAAACAAJ&pg=PP1&redir_esc=y#v=onepage&q&f=false (검색일: 2023. 6. 25).

19) 김필영, 「문화적 경계를 넘다-16세기 아메리카의 에스파냐 선교사 라스카사스(1474-1566)의 아메리카 원주민 인식」, 『다문화와 인간』, 5권, 1호 (2016), 7쪽.

20) 김세미, 「인권: 라스 카사스의 바야돌리드 논쟁」,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0쪽.

21) 김필영, 「문화적 경계를 넘다」, 8쪽.

22) 이영민, 「16세기 남미선교 도전과 과제」, 45쪽.

(Confesionario)을 작성하였다. 그는 교구 사제들에게 엔코멘테로들이 신법을 어긴다면 이들의 죄를 사면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²³⁾ 라스 카사스는 엔코미엔다 제도를 통해서 얻은 부와 원주민들에 대한 착취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스페인 왕의 아메리카 정복과 지배에 대한 정당성까지 문제삼았다. 이에 스페인 왕실은 고해성사 교본을 압수하도록 하였으며, 세폴베다는 라스 카사스의 주장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론과 정전론을 토대로 아메리카에서의 스페인 왕국의 군사적 정복 행위를 옹호하였다.²⁴⁾

라스 카사스와 세폴베다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사람들이 의견 대립에 많은 관심을 보이자, 스페인 왕실은 이 사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²⁵⁾ 사실 이 두 사람의 대립뿐만 아니라, 원주민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 차이, 아메리카 정복 자체의 도덕성의 문제, 1542년 신법 등을 불이행하는 식민지인과 고해성사를 거부하는 사제들과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 이미 다양한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었다. 카를로스 5세는 이러한 문제들을 결론짓기 위해 14인의 법학자와 신학자들의 협의회 소집을 명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마련된 회의가 바야돌리드 논쟁(Valladolid debate)이다.²⁶⁾

스페인 본토와 식민지의 통합을 추구하던 카를로스 5세는, 엔코미엔다 제도와 아메리카 원주민의 처우와 관련된 도덕적·이론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고자 라스 카사스와 세폴베다 간의 논쟁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카를로스 5세는 라스 카사스와 세폴베다를 1550년 8월과 155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바야돌리드 법원으로 불러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한 원주민의 도덕적 권리와 처우, 원주민의 종교 개종, 노예화에 관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²⁷⁾ 라스 카사스는 멕시코 원주민들의 대리인으로서 엔코

23) 하지만 당시 이 교본에 따르면 원주민들을 소유하고 있는 스페인인들이 의무적으로 그들을 해방하고 보상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반발이 매우 강하였다. 이성형 역,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가치, 1999), p.84.

24) 김필영, 「문화적 경계를 넘다」, 7쪽.

25) 이영민, 「16세기 남미선교 도전과 과제」, 31쪽.

26) 이영효, 「스페인의 초기 인식과 태도」, 141쪽.

27) studysmarter, "Valladolid Debate"

<https://www.studysmarter.co.uk/explanations/history/us-history/valladolid-debate/> (검색

미엔다 제도가 스페인 지배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세폴베다는 스페인 출신으로 원주민 통치권을 일임받은 엔코멘테로²⁸⁾의 의견을 대변하였다.²⁹⁾

카를로스 5세가 소집한 법관, 학자, 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저작을 토대로 정복 전쟁과 원주민 탄압을 정당화하는 세폴베다의 논리 그리고 『호교론 역사(*Apologética Historia*)』를 바탕으로 세폴베다의 주장을 반박한 라스 카사스의 논리를 검토하였다.³⁰⁾ 이 논쟁은 두 사람이 왕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서로의 견해에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바야돌리드 논쟁의 주요 쟁점은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처우와 노예화 문제였다. 라스 카사스는 원주민 보호와 신법의 이행 및 엔코미엔다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원주민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자발적으로 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야만인으로 낙인찍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세폴베다는 원주민을 문자, 기록, 성문법, 화폐도 없는 야만적인 제도와 관습만을 가진 존재로 보았고,³¹⁾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원주민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다스릴 수 없으니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라스 카사스는 원주민들이 정교한 문자, 언어, 법, 종교, 질서, 통치 능력 등을 지니고 있으며 무지하거나 야만적이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세폴베다가 인용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원주민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행위, 특히 원주민의 종교 개종과 관련된 행위들에 관하여, 세폴베다는 ‘선 무력, 후 선교’ 원칙에 기초하여, 원주민들의 식인풍습 및 인신 공양, 우상 숭배와 같은 야만적 성향은 자연법을 어긴

일: 2023. 6. 25).

28) 엔코멘테로들은 토착민의 보호와 그리스도교 전파를 근거로 원주민들에게 노동이나 생산물의 형태로 세금을 받고 노역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김윤경, 「16세기 아스테카 제국」, 9쪽.

29) 이영효, 「스페인의 초기 인식과 태도」, 141-142쪽.

30) 이영효, 같은 논문, 142쪽.

31) 이영효, 같은 논문.

죄에 해당하며, 가톨릭 신자인 스페인 사람들이 원주민을 벌할 책임이 있다고 설파하였다.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 모두 이교도이자 적이므로 기독교 선교를 위한 전쟁이 정당하다고 옹호했으며, 전쟁을 통한 선교를 평화적인 선교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³²⁾ 세폴베다는 원주민이 어느 정도 이성을 보유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 척결과 가톨릭 복음 전파가 우선 시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³³⁾

반면, 라스 카사스는 이교도와 이단자는 구분되어야 하며, 이교도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전쟁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단자에게는 폭력의 사용을 용인할 수 있으나, 아메리카 원주민은 이단자가 아니므로 폭력과 전쟁을 통한 선교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를 인용하여 두 가지 종교적 관습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유연한’ 선교를 강조했다.³⁴⁾ 기독교를 접하지 못한 원주민이 기독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 복종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스페인 출신의 정복자들이 처음부터 원주민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원주민의 생명을 위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바야돌리드 논쟁은 원주민이 이성적인 존재인가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여 이교도 및 이단자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가톨릭 개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원주민의 노예화가 정당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무력과 전쟁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되었다. 바야돌리드의 논쟁 이후 스페인 왕실과 서인도위원회는 개종의 수단, 전쟁의 정당성과 관련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는데,³⁵⁾ 어느 쪽도 완전한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라스 카사스는 신법에 따라 스페인의 아메리카 정복을 종식시키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세폴베다 역시 엔코미엔다 제도를 제한하는 신법이 바뀌기를 원했으나 원하던 바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논쟁 이후 라스 카사스가 주장하던 대로 원주민들은 착취의 대

32) 이성형, 『라틴 아메리카 역사와 사상』, 88쪽.

33) 이영효, 같은 논문, 144쪽. 에서 재인용.

34) 김필영, 「문화적 경계를 넘다」, 10쪽.

35) 이영효, 같은 논문, 145쪽.

상이 아닌 한 명의 인간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다. 한 명의 인간이지만, 이들은 미성숙한 인간으로 인식되어 우수한 백인의 지도 및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고가 자리 잡게 되었고, 이들의 강제 노동도 정당화되면서 식민주의적 사고가 만연하게 되었다.³⁶⁾ 이후 라스 카사스는 자신의 논지를 재정비하여 지지자를 모았고,³⁷⁾ 세폴베다는 입장을 번복하며 원주민 노예화와 부당한 정복 과정에 반대하였으나, 여전히 스페인의 원주민 지배의 당위성은 인정하였다.³⁸⁾

III. 바야돌리드 논쟁 이후 스페인의 아메리카 원주민에 관한 법제

1. 스페인의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법제에 대한 평가

앞서 원주민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원주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스페인의 법규로서, 1513년 부르고스 법과 1542년 신법이 제정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 식민 지배 초기부터 본국과 식민지의 통합 그리고 원주민에 대한 처우를 고민하여 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바야돌리드 논쟁 이후, 스페인은 본토와 식민지의 통합 및 식민지 원주민 인권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쏟게 되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Felipe II)가 1573년에 공포한 ‘새로운 발견과 인구에 관한 조례’(las Ordenanzas de Nuevos Descubrimientos y Poblaciones)에서는 원주민에 대

36) 전용갑 외, 『라틴아메리카 역사 산책』, 190쪽.

37) 라스 카사스는 원주민의 노예화는 반대하였으나 그 대체 노동력으로 아프리카 흑인의 노예화에는 찬성하였다. 이는 훗날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흑인을 원주민보다 하위 계층으로 분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송기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거짓 말이다”, 『라틴아메리카 문화 ‘흠뻑’: 라틴아메리카를 즐기다』, 이미정 외 (한울, 2023), 244쪽.

38) studysmarter, “Valladolid Debate”.

<https://www.studysmarter.co.uk/explanations/history/us-history/valladolid-debate/> (검색일: 2023. 6. 25).

한 스페인의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펠리페 2세는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메리카 식민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³⁹⁾

“너희는 그들과(원주민과) 영원한 우정을 유지해야 하고, 발견한 땅과 섬에 거주하는 카시크족(los caciques)과 원주민들이 모든 사랑과 우정 속에서 스페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들과 함께해야 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의 속국으로서 그들과 잘 지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가신과 그 땅에 있는 다른 스페인 사람처럼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준수되어야 한다.”⁴⁰⁾

이러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엔코멘테로를 비롯한 식민 지배자들은 부르고스 법과 마찬가지로 신법의 이행에도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법을 통해 원주민의 노동력을 통제하려는 국왕과 노동력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식민지 엘리트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더욱 두드러졌다. 그 결과 원주민 보호에 관한 법이 의도적으로 무시되기 일쑤였고, 국왕이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면서 눈감아 주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는 식민지자들의 갈등을 피하고 전쟁과 외교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여 기생적인 귀족층을 부양하기 위한 명목의 비용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⁴¹⁾

스페인 왕국과 식민 지배자들이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자들은 ‘준중하지만 지키지는 않는다’(Obedezco pero no cumplo)라는 태도를 고수하였다.⁴²⁾ 충성심을 가지고 있던 알론소 데 소리타(Alonso de Zorita)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19년 동안 관리로 있으면서 법률을 잘 지킨 정직한 인물로, 관리직에서 은퇴 후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그는 펠리페 2세에게 바치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39) 해당 내용은 후안 데 오반도(Juan de Ovando)의 『원주민 제도 법전(Recopilación de Leyes de Indias)』 제2권에 쓰여 있으며, 제2권의 전체 내용은 1680년 『원주민 제도 법전』의 제4권 제1장~7장까지에 해당된다.

40) Manuel Aranda Mendiáz, “La protección de los indígenas en la Recopilación de Antonio de León Pinelo y en la Recopilación de Leyes de Indias de 1680”, *Revista de la Inquisición*, Vol.12 (December 2006), p.277. 에서 재인용.

41) 벤자민 킨·키스 헤인즈, 김원중·이성훈 역,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상』, (주)그린비 출판사, 2020), 266-267쪽.

42) 전용갑 외, 『라틴아메리카 역사 산책』, 177쪽.

“폐하와 국왕평의회가 바라는 바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은 불쌍한 인디오들을 위해, 그들의 수를 증대시키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발표되는 법들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들은 복종의 대상은 될지언정 실행의 대상은 아니며, 그 때문에 인디오들은 끝없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폐하의 법령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⁴³⁾

원주민에 관한 당시 스페인 법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법이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법들은 원주민과 스페인 사람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식민 지배자들의 이익을 위한 원주민 노동력의 착취와 노예화에 활용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스페인 법은 표면상으로는 원주민의 ‘문명화’를 주도하고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원주민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생활을 규제함으로써 원주민의 문화와 관습을 말살시키고, 이들을 스페인 문화와 관습에 강제로 동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원주민 제도 법전(Recopilación de Leyes de las Indias)의 편찬

15세기부터 시작된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식민 지배는 여러 가지 원주민 관련 법제를 쏟아내는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법제를 보완하는 과정은 원주민에 대한 불평등에서 기원한 것이었다. 다양한 사회 변화에 따라 관련 법제의 모습도 변화하였다. 스페인의 원주민 관련 법제는 실효성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재정비의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스페인은 식민지의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이후 관련 법제를 정리한 결과물이 후안 데 오반도(Juan de Ovando)의 지시와 로페스 데 벨라스코(López de Velasco)의 참여로 발간된 『*Copilata de Leyes de Indias*』와 1582년 스페인 의회의 의뢰로 출판된 법전인 『엔시나스의 칙허증(*Cedulario de Encinas*)』이다. 『엔시나스의 칙허증』은 1581년에 원주민 의회의 서기장 디에고 데 엔시나스(Diego de Encinas)에게 의뢰한 편집본으

43) 벤자민 킨·키스 헤인즈,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상』, 267쪽.

로, 1596년에 “조항, 명령, 조례의 장을 복사하라”는 왕실의 명령에 따라 저자의 이름 없이 4권으로 출판되었다. 모든 조항은 연대순으로 충실하게 필사되었고, 주제별로 배열되어 있다. 해당 편집본은 발견 당시부터 1596년까지 아메리카 대륙을 위해 제정된 법률을 통합하고, 사용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폐지된 조항은 생략되었다. 매우 제한적으로 사본을 배포하기로 한 공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엔시나스의 칙허증』에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문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한 명의 저자가 집필한 저작물이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15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이다.⁴⁴⁾

16세기 말 로페스 소리아(López Zorrilla)와 디에고 데 아길라르 이 아쿠냐(Diego de Aguilar y Acuña)가 스페인의 원주민 관련 법전을 편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별다른 진척을 없이 1624년 안토니오 데 레온 피넬로(Antonio de León Pinelo)가 원주민 법률 편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야, 1680년 카를로스 2세(Carlos II)가 공포한 『원주민 제도 법전(*Recopilación de Leyes de las Indias*)』으로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 법전은 원주민 법에서 가장 중요한 편집본으로 자리잡게 되었고,⁴⁵⁾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반에 걸쳐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활용되었다.⁴⁶⁾

『원주민 제도 법전』은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페인 왕실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한 5,515개의 다양한 주제의 법령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권의 주요 내용은 <표-1>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44) Agencia Estatal Boletín Oficial del Estado, “CEDULARIO INDIANO”

https://www.boe.es/biblioteca_juridica/publicacion.php?id=PUB-LH-2018-56 (검색일: 2023. 5. 29).

45) Aranda Mendiáz, *La protección de los indígenas*. p.280-281.

46) 『원주민 제도 법전』은 스페인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문서 중 하나로, 당시의 역사적 문맥과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현대의 인권 개념이나 법제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당 법전을 통해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법체계와 식민지 통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법전을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당시 원주민 불평등 문제와 식민지 시대의 정치, 사회, 법률 체계를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 기능하고 있다.

<표-1> 원주민 제도 법전 각 권의 주요 내용⁴⁷⁾

1권	왕실의 후원, 교회 조직, 문화 및 교육과 같은 종교 관련 사항
2권	원주민 의회, 청문회 등 원주민 정부의 구조
3권	총독, 주지사 및 군대의 의무, 관할권, 권한 및 기능
4권	대륙의 발견과 영토 정복, 인구, 토지 분배 공공사업 및 채굴에 대한 규칙
5권	공법, 관할권, 권한 및 시장, 코레히도르 및 지방 관리 등에 대한 규정
6권	원주민 공동체 및 관리, 사회적 지위, 세금, 엔코미엔다 등의 제도
7권	경찰 활동, 범죄 및 형벌 사항
8권	재정 및 수입 조직
9권	아메리카 사업 조직과 규제 수단, 항해 및 무역, 군대와 함대 관련 사항, 카사 데 콘트라타시온(Casa de Contratación) ⁴⁸⁾ 조직

출처: CONGRESO de la REPÚBLICA del PERÚ

이 법전에 포함된 법령 중에서 789개의 법령이 원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⁴⁹⁾ 그러한 법령들은 식민지의 행정, 경제, 사법, 교육 등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원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압하거나 착취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제4권 12번째 법령의 콤포시시온(composición)은 왕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원주민의 땅을 탈취하는 제도로 활용되었다. 제6권에는 원주민에 대한 주요 법안이 담겨 있는데, 11번째 법령인 엔코미엔다와 레파르티미엔토(repartimiento)⁵⁰⁾ 체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47) CONGRESO de la REPÚBLICA del PERÚ, “Leyes de Indias”

https://leyes.congreso.gob.pe/leyes_indias.aspx (검색일: 2023. 6. 24).

48) 카사 데 콘트라타시온(Casa de Contratación)은 1503년에 스페인 군주제에 의해 창설된 조직으로 스페인과 아메리카 대륙 간의 무역 및 항해를 규제하고 상업 계약 및 상업 관련 시설로 기능하였다. memoriachilena, “Casa de Contratación”

<https://www.memoriachilena.gob.cl/602/w3-article-93056.html> (검색일: 2023. 6. 27).

49) 『원주민 제도 법전』(*Recopilación de Leyes de las Indias*)의 원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1권: 95개, 2권: 41개, 3권: 13개, 4권: 55개, 5권: 27개, 6권: 520개, 7권: 8개, 8권: 23개, 9개: 7개로 총 789개의 원주민 조항이 있으며, 이는 전체 5,515개의 법률 중 14.45%에 해당한다. Aranda Mendiáz, *La protección de los indígenas*. p.293.

50) ‘레파르티미엔토’는 분배, 할당이라는 뜻으로, 원주민들이 최소한의 급여만을 받으며 스페인인들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한 착취 제도로 엔코미엔다 시스템의 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였다.

3. 현대 사회 아메리카 국가들의 원주민 관련 법제에 대한 영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페인의 식민 지배 시기부터 이어진 계급화와 불평등은 아메리카 대륙의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인 악습으로 남아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들은 식민 지배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며, 원주민 인권에 대한 문제는 국제적인 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국제적 논의의 결과물 중 하나로, 2007년 9월 13일 뉴욕에서 열린 제61차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원주민 권리에 대한 UN 선언(Declar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sobre los derechos de los pueblos indígenas) 제46조⁵¹⁾가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원주민의 국제법적 지위가 상승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과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원주민들에 대한 전통과 문화를 인정하면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페루에서는 2001년 알레한드로 톨레도(Alejandro Toledo)가 페루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원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는 전문가와 원주민 지도자를 모아 원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의 취임식에는 안데스 국가의 모든 대통령이 참석하여 원주민의 권리를 위한 ‘마추픽추 선언’(Declaración de Machu Picchu)에 서명하였다. 시민 노동연합(Asociación Civil Labor, ACL)은 환경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원주민들의 의사 결정권을 위해서 투쟁하였다. 2011년에는 모든 공공 및 민간 투자자가 지역 사회나 토착민의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역 원

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강제 노동력 착취로 인해 학대를 받았다. DEFINICIÓN DE, “REPARTIMIENTO”

<https://definicion.de/repartimiento/> (검색일: 2023. 6. 24).

- 51) Naciones Unidas, “Declar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sobre los derechos de los pueblos indígenas”, https://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DRIPS_es.pdf (검색일: 2023. 6. 25).

주민 단체와 논의하도록 하는 새로운 대중자문법이 제정되어 페루의 오안타 우말라(Ollanta Humala)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⁵²⁾

2009년 개정된 볼리비아 헌법은 다문화·상호문화적인 국가의 특성을 인정하고, 원주민 언어와 전통을 보호하면서 원주민의 지역 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규정을 새롭게 수립하였다.⁵³⁾ 이를 바탕으로 2010년 볼리비아에서 제정된 ‘관할권 경계에 관한 법률’(Ley de deslinde jurisdiccional)은 원주민 문화와 전통을 보호하고 원주민과 일반 시민의 조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문화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들의 재산, 인권,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근간을 제공하였다.⁵⁴⁾

콜롬비아에서는 1993년 ‘콜롬비아 원주민 권리법’(Los derechos de los indígenas en Colombia)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콜롬비아에서 거주하는 원주민의 다양성을 문화 및 사회적 유산으로서 인정하여 법의 울타리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주민이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고 정치와 사회활동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인정한 이 법률은, 콜롬비아에서 원주민의 인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⁵⁵⁾

에콰도르에서는 2008년 헌법에서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Función Judicial y justicia indígena)⁵⁶⁾이 마련되었으며, 칠레의 2008년 ‘원주민의 보호,

52)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불평등과 공동체 파괴, 토지 수탈의 가장 큰 문제점이 원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제는 문제를 보완할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안에 대하여 투자와 경제 성장에 제한요인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제시되고 있음 주지할 필요가 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eru’s Balancing Act: Indigenous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https://www.cfr.org/blog/perus-balancing-act-indigenous-rights-and-economic-development>
 (검색일: 2023. 5. 29).

53) Political Database of the Americas, “República del Bolivia”
<https://pdba.georgetown.edu/Constitutions/Bolivia/bolivia09.html> (검색일: 2023. 6. 25).

54) EVO MORALES AYMA, “LEY DE DESLINDE JURISDICCIONAL”
<https://mineria.gob.bo/juridica/20101221-17-44-55.pdf> (검색일: 2023. 6. 25).

55) 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LOS DERECHOS DE LOS INDIGENAS EN COLOMBIA”
<http://www.cidh.org/countryrep/colombia93sp/cap.11.htm> (검색일: 2023. 6. 25).

증진 및 개발에 관한 규범 수립 및 원주민 개발을 위한 공기업 설립법'(LEY INDÍGENA N° 19.253 - Establece Normas sobre Proteccion, Fomento y Desarrollo de los Indigenas, y Crea la Corporacion Nacional de Desarrollo Indigena)⁵⁷⁾ 또한 원주민 교육, 국토 관리, 문화 보존 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들은 소외된 원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원주민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스페인 식민 지배부터 나타난 역사적 사건들과 이에 대응하여 식민 법제를 제정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오래 전 스페인이 아메리카 식민지 원주민에 대한 고민을 반복하면서 이를 위한 대응 법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는 점이, 독립 이후 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원주민에 대한 관심과 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제가 마련되었음에도 실제 원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 지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원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이나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원주민의 수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페인이 많은 법제를 구축하면서도 원주민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이지 못했던 점과 유사하다. 특히 COVID-19 이후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강제 퇴거, 식수 부족, 원주민 공동체 시위에 대한 과도한 경찰의 대응 등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원주민들의 투쟁과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⁵⁸⁾ 스페인이 원주민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였음에도 진정한

56) ASAMBLEA CONSTITUYENTE, “CONSTITUCIÓN DEL ECUADOR”
<https://www.acnur.org/fileadmin/Documentos/BDL/2008/6716.pdf> (검색일: 2023. 6. 25).

57) Biblioteca del Congreso Nacional de Chile / BCN, “LEY INDÍGENA N° 19.253 - ESTABLECE NORMAS SOBRE PROTECCION, FOMENTO Y DESARROLLO DE LOS INDIGENAS, Y CREA LA CORPORACION NACIONAL DE DESARROLLO INDIGENA”
<https://www.bcn.cl/leychile/navegar?idNorma=30620&idVersion=2008-05-09>
 (검색일: 2023. 6. 25).

58) CELS, “comunidades indígenas: las desigualdades se profundizaron durante la pandemia”
<https://www.cels.org.ar/web/2021/02/comunidades-indigenas-las-desigualdades-se-profund>

사회 통합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라틴아메리카 사회 내부의 인종 간 격차를 줄이고 진정한 통합을 위한 법제와 실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IV. 나가는 글

스페인 왕국이 본국과 멀리 떨어진 식민지를 약 4세기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식민지 엘리트들의 충성심 확보와 유지를 위한 정치 기구의 수립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스페인이 식민 지배 초기부터 본국과의 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처우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원주민에 관한 법이 준수되지 않거나,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한 채 지배 계층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악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식민 지배자들의 착취를 위한 제도인 엔코미엔다, 콤포시시온, 레파르티미엔토 등은 이들의 이익 축적 및 권력 남용으로 이어져 인종적 계층 구조를 형성하게 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스페인은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지배자로서 원주민에 대한 여러 관심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1550년 바야돌리드 논쟁은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기존 유럽의 시각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 논쟁 이후 스페인은 원주민에 대한 다양한 법제를 제정하여 원주민을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원주민에 대한 법제가 축적되자 방대한 분량의 법제들을 재정비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의 제정이나 재정비가 현실에서는 구체적인 보호 장치로 전환되거나 작동하지는 않았다. 결국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관련 법제들은 식민 지배의 과정에서 원주민의 통치를 편리하게 하는 방편으로만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에도 지속되어 원주민에 대한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세기 UN선언 이후 원주민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원주민 인권에 대한 문제는 지역적 차원의 문제에서 세계적 문제로 그 범주를 달리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들의 법령들 역시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해당 국가의 정부와 원주민 공동체의 협력 및 관련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원주민 불평등 양상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방안과 대응이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거나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이들 국가에서는 스페인 식민 지배에서 비롯된 인종적 사회계층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원주민에 관한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원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법제의 구축 또는 이를 강력하게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 노력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지역 원주민의 권익 보호에 관한 국내외의 학술적 관심과 지속적인 법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 김봉철·임소라·양수영·박철용, 「라틴아메리카 식민정책과 근대 조약: 1750년 마드리드 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EU연구』, 65 (2023), 217-242쪽.
- 김세미, 「인권: 라스 카사스의 바야돌리드 논쟁」,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윤경, 「16세기 아스테카 제국의 정치적 식민화: 변화인가 연속인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4.3 (2008). 1-33쪽.
- 김필영, 「문화적 경계를 넘다-16세기 아메리카의 에스파냐 선교사 라스카사스(1474-1566)의 아메리카 원주민 인식」, 『다문화와 인간』, 5권, 1호 (2016), 137-165쪽.
- 나송주, 「착한 야만인에서 부패한 인디오로」, 『세계문화비교연구』, 8 (2003), 43-62쪽.
- 벤자민 킨·키스 헤인즈,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상』, 김원중·이성훈 역 (주)그린비출판사, 2020).
- 송기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거짓말이다”, 『라틴아메리카 문화 ‘흠뻑’: 라틴아메리카를 즐기다』, 이미정 외 (한울, 2023), 228-249쪽.
- 이강혁, 『라틴아메리카역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2008).
- 이성형,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까치, 1999).
- 이영민, 「16세기 남미선교와 바야돌리드(Valladolid) 논쟁의 선교적 도전과 과제」,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이영효,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스페인의 초기 인식과 태도」, 『역사학연구』 (2007), 125-160쪽.
- 전용갑·신정환·황순양·박영미, 『라틴아메리카 역사 산책. 올메카 문명에서 쿠바혁명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8).

Agencia Estatal Boletín Oficial del Estado, “CEDULARIO INDIANO”

https://www.boe.es/biblioteca_juridica/publicacion.php?id=PUB-LH-2018-56

(검색일: 2023. 5. 29).

ASAMBLEA CONSTITUYENTE, “CONSTITUCIÓN DEL ECUADOR”

<https://www.acnur.org/fileadmin/Documentos/BDL/2008/6716.pdf> (검색일: 2023. 6. 25).

Beatriz BERNAL GÓMEZ, “EL DERECHO INDIANO, CONCEPTO, CLASIFICACIÓN Y CARACTERÍSTICAS”, *Ciencia Jurídica*, Vol.4, No.2, (2015), pp.183-193.

Biblioteca del Congreso Nacional de Chile / BCN, “LEY INDÍGENA N° 19.253 - ESTABLECE NORMAS SOBRE PROTECCION, FOMENTO Y DESARROLLO DE LOS INDIGENAS, Y CREA LA CORPORACION NACIONAL DE DESARROLLO INDIGENA”

<https://www.bcn.cl/leychile/navegar?idNorma=30620&idVersion=2008-05-09> (검색일: 2023. 6. 25).

CELS, “comunidades indígenas: las desigualdades se profundizaron durante la pandemia”

<https://www.cels.org.ar/web/2021/02/comunidades-indigenas-las-desigualdades-se-profundizaron-durante-la-pandemia/> (검색일: 2023. 6. 25).

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LOS DERECHOS DE LOS INDIGENAS EN COLOMBIA”

<http://www.cidh.org/countryrep/colombia93sp/cap.11.htm> (검색일: 2023. 6. 25).

CONGRESO de la REPÚBLICA del PERÚ, “Leyes de Indias”

https://leyes.congreso.gob.pe/leyes_indias.aspx (검색일: 2023. 6. 2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eru’s Balancing Act: Indigenous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https://www.cfr.org/blog/perus-balancing-act-indigenous-rights-and-economic-development> (검색일: 2023. 5. 29).

DEFINICIÓN DE, “REPARTIMIENTO”

<https://definicion.de/repartimiento/> (검색일: 2023. 6. 24).

encyclopedia.com, “Burgos, Laws Of”

<https://www.encyclopedia.com/humanities/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and-maps/burgos-laws> (검색일: 2023. 6. 24).

EVO MORALES AYMA, “LEY DE DESLINDE JURISDICCIONAL”

<https://mineria.gob.bo/juridica/20101221-17-44-55.pdf> (검색일: 2023. 6. 25).

Manuel Aranda Mendiáz, “La protección de los indígenas en la Recopilación de Antonio de León Pinelo y en la Recopilación de Leyes de Indias de 1680”, *Revista de la Inquisición*, Vol.12, (December 2006), pp.277-294.

memoriachilena, “Casa de Contratación”

<https://www.memoriachilena.gob.cl/602/w3-article-93056.html> (검색일: 2023. 6. 27).

Naciones Unidas, “Declar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sobre los derechos de los pueblos indígenas”

https://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DRIPS_es.pdf (검색일: 2023. 6. 25).

Political Database of the Americas, “República del Bolivia”

<https://pdba.georgetown.edu/Constitutions/Bolivia/bolivia09.html> (검색일: 2023. 6. 25).

Sánchez, Francisco, fl, “Leyes y ordenanzas nuevamente hechas por su Magestad, para la gouernacion de las Indias, y buen tratamiento, y conseruacion de los Indio”

https://books.google.co.kr/books?id=UmxjAAAAcAAJ&pg=PP1&redir_esc=y#v=onepage&q&f=false (검색일: 2023. 6. 25).

studysmarter, “Valladolid Debate”

<https://www.studysmarter.co.uk/explanations/history/us-history/valladolid-debate/> (검색일: 2023. 6. 25).

WORDROW, “아우디엔시아”

<https://wordrow.kr/%EC%9D%98%EB%AF%B8/%EC%95%84%EC%9A%B0%EB%94%94%EC%97%94%EC%8B%9C%EC%95%84/> (검색일: 2023. 6. 25).

2023. 6. 24).

WORLD HISTORY ENCYCLOPEDIA, “Spanish Requirement”

https://www.worldhistory.org/Spanish_Requirement/ (검색일: 2023. 6. 24).

〈Abstract〉

A Study of Indigenous Legislation in European Colonization of the Americas: Focusing on the Case of Spain

Bongchul Kim* · Sora Lim** · Suyoung Yang*** · Chulyong Park****

In the 15th century, the Spanish Empire had settled in America and dominated the indigenous peoples of Latin America. The some of the region showed that these native were even expropriated after the domination. The Spanish Empire recognized this situation and started to think of how to manage these people who were ruled. At that time, the empire tried to establish law and discipline for recognition of the indigenous people the legislation was on purpose to protect the human right for them. In spite of the effort to legislate the laws in the mainland, however, the adaptation of the laws was another problem. This law can not function as not only protection but the ladder for escaping the life of socially underprivileged.

According to this, the present study will introduce the discussion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legislated spanish laws from 16th century when the Spanish Empire had been in the business of colonization. Furthermore, we thought the turning point of thoguthful recognition on the native is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ong625@hufs.ac.kr)

** Professor, Department of Portugues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gelalim@hufs.ac.kr)

*** Department of Spanish Language and Litera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202132042@hufs.ac.kr)

****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bg06096@hufs.ac.kr)

‘Valladolid debate’. Through this debate, this study fou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ain and Latin America and treatment of them at that time. The thing is to analyze the 『*Recopilación de Leyes de las Indias*』 which was merged in 1680 and to reflect on how that law was applied to them. This study would provide the direction to understand what endeavors the Spanish empire did to recognize the race during the period of colonization.

Key words: Spain, Latin America, indigenous legislation, Valladolid debate

원고접수일: 2023. 6. 15.

심사마감일: 2023. 7. 10.

게재 확정일: 2023. 7. 11.

부록 1

Libro Primero

순번	목차명
1	De la Santa fé Catolica.
2	De las Iglesias Catedrales, y Parroquiales y de sus erecciones y fundaciones.
3	De los Monasterios de Religiosos y Religiosas, Hospicios, y Recogimientos de huerfanos.
4	De los Hospitales, y Cofradias.
5	De la inmunidad de las Iglesias, y Monasterios, y que en esta razon se guarde el derecho de los Reynos de Castilla.
6	Del Patronazgo Real de las Indias.
7	De los Arzobispos, Obispos, y Visitadores Ecclesiasticos.
8	De los Concilios Provinciales, y Synodales.
9	De las Bulas, y Breves Apostolicos.
10	De los Iuezes Ecclesiasticos, y Conservadores.
11	De los Dignidades, y Prebendados de las Iglesias Metropolitanas, y Catedrales de las Indias.
12	De los Clerigos.
13	De los Curas, y Doctrineros.
14	De los Religiosos.
15	De los Religiosos Doctrineros.
16	De los Diezmos.
17	De la Mesada Ecclesiastica.
18	De las sepulturas, y derechos Ecclesiasticos.
19	De los Tribunales de el Santo Oficio de la Inquisicion, y sus Ministros.
20	De la Santa Cruzada.
21	De los Questores, y limosnas.
22	De las Vniversidades y Estudios generales, y particulares de las indias.
23	De los Colegios, y Seminarios.
24	De los Libros que se imprimen, y passan á las Indias.

Libro Segundo

순번	목차명
1	De las leyes, provisiones, cédulas, y ordenanças Reales.
2	Del Consejo Real, y Iunta de Guerra de Indias.
3	Del Presidente, y los del Consejo Real de las Indias.
4	De el Gran Chanciller, y Registrador de las Indias, y su Teniente en el Consejo.
5	Del Fiscal de el Consejo Real de las Indias.
6	De los Secretarios de el Consejo Real de las Indias.
7	Del Tesorero general receptor de el Consejo Real de las Indias.
8	Del Alguazil mayor del Consejo Real de las Indias.
9	De los Relatores de el Consejo Real de las Indias.
10	Del Escrivano de Camara del Consejo Real de las Indias.
11	De los Contadores del Consejo Real de Indias.
12	De el Coronista mayor del Consejo Real de las Indias.
13	De el Cosmografo, y Catedratico de Matematicas de el Consejo Real de las Indias.
14	De los Alguaziles, Avogados, Procuradores, Porteros, Tassador, y los demás Oficiales del Consejo Real de las Indias.
15	De las Audiencias, y Chancillerias Reales de las Indias.
16	De los Presidentes, y Oidores de las Audiencias, y Chancillerias Reales de las Indias.
17	De los Alcaldes del Crimen de las Audiencias de Lima y Mexico.
18	De los Fiscales de las Audiencias, y Chancillerias Reales de las Indias.
19	De los Iuzgados de Provincia de los Oidores, y Alcaldes de el Crimen de las Audiencias, y Chancillerias Reales de las Indias.
20	De los Alguaziles mayores de las Audiencias.
21	De los Tenientes de Gran Chanciller de las Audiencias, y Chancillerias Reales de las Indias.
22	De los Relatores de la Audiencias, y Chancillerias Reales de las Indias.
23	De los Escrivanos de Camara de las Audiencias Reales de la Indias.
24	De los Avogados de las Audiencias, y Chancillerias Reales de las Indias.
25	De los Receptores, y penas de Camara, gastos de Estrados, y Iusticia, y Obras pia de las Audiencias y chancillerias Reales de las Indias.
26	De los Tassadores, y Repartidores de las Audiencias, y Chancillerias Reales

	de las Indias.
27	De los Receptores ordinarios, y su Repartidor de las Audiencias, y Chancillerias Reales de las Indias.
28	De los Procuradores de las Audiencias, y Chancillerias Reales de las Indias.
29	De los Interpretes.
30	De los Porteros, y otros Oficiales de las Audiencias, y Chancillerias Reales de las Indias.
31	De los Oidores, Visitadores ordinarios de los distritos de Audiencias, y Chancillerias Reales de las Indias.
32	Del luzgado de bienes de difuntos, y su administracion, y cuenta en las Indias, Armadas, y Vageles.
33	De las informaciones, y pareceres de servicios.
34	De los Visitadores generales, y particulares.

Libro Tercero

순번	목차명
1	Del dominio, y jurisdiccion Real de las Indias.
2	De la provision de oficios, gratificaciones, y mercedes.
3	De los Virreyes, y Presidentes Governadores.
4	De la guerra.
5	De las armas, polvora, y municiones.
6	De las fabricas, y fortificaciones.
7	De los Castillos, y fortalezas.
8	De los Castellanos, y Alcaldes de los Castillos, y fortalezas.
9	De la dotacion, y situacion de los Presidios, y fortalezas.
10	De los Capitanes, Soldados, y Artilleros.
11	De las causas de Soldados.
12	De los pagamentos, sueldos, ventajas, y ayudas de costa.
13	De los Cosarios, y Pyratas, y aplicación de las presas, y trato con estrangeros.
14	De los informes, y relaciones de servicios, partes, y calidades de que se deve dar cuenta al Rey.
15	De las precedencias, ceremonias, y cortesias.
16	De las cartas, Correos, é Indios Chasquis.

Libro Cuarto

순번	목차명
1	De los descubrimientos.
2	De los descubrimientos por Mar.
3	De los descubrimientos por Tierra.
4	De las pacificaciones.
5	De las Poblaciones.
6	De los Descubridores, Pacificadores, y Pobladores.
7	De la poblacion de las Ciudades, Villas, y Pueblos.
8	De las Ciudades, y Villas, y sus preeminencias.
9	De los Cabildos, y Concejos.
10	De los oficios Concegiles.
11	De los Procuradores generales, y particulares de las Ciudades, y Poblaciones.
12	De la venta, composicion, y repartimiento de tierras, solares, y aguas.
13	De los Propios, y Positos.
14	De las Alhondigas.
15	De las sisas, derramas, y contribuciones.
16	De las obras publicas.
17	De los caminos publicos, posadas, ventas, mesones, terminos, pastos, montes, aguas, arboledas, y plantio de viñas.
18	Del comercio, mantenimientos, y frutos de las Indias.
19	De el descubrimiento, y labor de las minas.
20	De los Mineros, y Azogueros, y sus privilegios.
21	De los Alcades mayores, y Escrivanos de minas.
22	Del ensaye, fundicion, y marca del oro, y plata.
23	De las Casas de moneda, y sus Oficiales.
24	Del valor del oro, plata, y moneda, y su comercio.
25	De la pesqueria, y envio de perlas, y piedras de estimacion.
26	De los obrajes.

Libro Quinto

순번	목차명
1	De los terminos, division, y agregacion de la Governaciones.
2	De los Gobernadores, Corregidores, Alcaldes mayores, y sus Tenientes, y Alguaziles.
3	De los Alcaldes ordinarios.
4	De los Provinciales, y Alcaldes de la Hermandad.
5	De los Alcaldes, y Hermanos de la Mesta.
6	De los Protomedicos, Medicos, Cirujanos, y Boticarios.
7	De los Alguaziles mayores, y otros de las Ciudades.
8	De los Escrivanos de Governacion, Cabildo, y Numero, Publicos, y Reales, y Notarios Eclesiasticos.
9	De las competencias.
10	De los pleytos, y sentencias.
11	De las recusaciones.
12	De las apelaciones, y suplicaciones.
13	De la segunda suplicacion.
14	De las entregas, y execuciones.
15	De las residencias, y luezes, que las han de tomar.

Libro Sexto

순번	목차명
1	De los Indios.
2	De la libertad de los Indios.
3	De las Reducciones, y Pueblos de Indios.
4	De las caxas de censos, y bienes de Comunidad, y su administracion.
5	De los tributos, y tassas de los Indios.
6	De los Protectores de Indios.
7	De los Caciques.
8	De los repartimientos, encomiendas, y pensiones de Indios, y calidades de los titulos.
9	De los Encomenderos de Indios.
10	De el buen tratamiento de los Indios.

11	De la sucession de encomiendas, entretenimientos, y ayudas de costa.
12	Del servicio personal.
13	Del servicio en chacras, viñas, olivares, obrajes, ingenios, perlas, tambos, requas, carreterias, casas, ganados, y bogas.
14	Del servicio en coca, y añir.
15	Del servicio en minas.
16	De los Indios de Chile.
17	De los Indios de Tucuman, Paraguay, y Rio de la Plata.
18	De los Sangleyes.
19	De las confirmaciones de encomiendas, pensiones, rentas, y situaciones.

Libro Septimo(Séptimo)

순번	목차명
1	De los Pesquisidores, y luezes de comission.
2	De los juegos, y jugadores.
3	De los casados, y desposados en España, que están ausentes de sus mugeres, y esposas.
4	De los vagabundos, y Gitanos.
5	De los Mulatos, Negros, Berberiscos, é hijos de Indios.
6	De las Carceles, y Carceleros.
7	De las visitas de Carcel.
8	De los delitos, y penas, y su aplicacion.

Libro Octavo

순번	목차명
1	De las Contadurias de Cuentas, y sus Ministros.
2	De los Contadores de Cuentas, Resultas, y Ordenadores.
3	De los Tribunales de Hazienda Real.
4	De los Oficiales Reales, y Contadores de tributos, sus Tenientes, y Guardas mayores.
5	De los Escrivanos de Minas, y Registros.
6	De las Caxas Reales.

7	De los Libros Reales.
8	De la administracion de la Real hazienda.
9	De los tributos de Indios, puestos en la Corona Real, y otros procedidos de vacantes de encomiendas.
10	De los quintos Reales.
11	De la administracion de minas, y remission del cobre á estos Reynos, y de las de alcrevite.
12	De los tesoros, depositos, y rescates.
13	De las alcavalas.
14	De las Aduanas.
15	De los almojarifazgos, y derechos Reales.
16	De las avaluaciones, y afueros generales, y particulares.
17	De los descaminos, extravijs, y commissos.
18	De los derechos de esclavos.
19	De la media annata.
20	De la venta de oficios.
21	De la renunciacion de oficios.
22	De las confirmaciones de oficios.
23	De los estancos.
24	De los novenos, y vacantes de Obispados.
25	De las almonedas.
26	De los salarios, ayudas de costa, entretenimientos, y quitaciones.
27	De las situaciones.
28	De las libranças.
29	De las cuentas.
30	Del envio de la Real hazienda.

Libro Nono(Noveno)

순번	목차명
1	De la Real Audiencia, y Casa de Contratacion, que reside en Sevilla.
2	Del Presidente, y luezes de la Casa de Contratacion.
3	De los luezes Letrados, Fiscal, Solicitador, y Relator de la Casa.
4	Del luez Oficial, que reside en la Ciudad de Cadiz.

5	Del luez Oficial, y Consul, que ván á los Puertos al despacho de flotas, y Armadas.
6	Del Prior, y Consules, y Vniversidad de Cargadores á las Indias, de la Ciudad de Sevilla.
7	Del Correo mayor de la Casa de Contratacion.
8	De la Contaduria de Averias, y Contadores Diputados.
9	De la contribucion, administracion, y cobrança de el derecho de Averia.
10	De los Escrivanos de Camara, y otros Escrivanos, y Repartidor de la Casa de Contratacion de Sevilla.
11	De los Alguaziles, Porteros, y otros Oficiales de la Casa.
12	De la Carcel, Alcaide, y Carcelero de la Casa de Contratacion.
13	De los Compradores de plata.
14	De los bienes de difuntos en las Indias, y su administracion, y cuenta en la Casa de Contratacion de Sevilla.
15	De los Generales, Almirantes, y Gobernadores de las flotas, y Armadas de la Carrera de Indias.
16	De el Veedor, y Contador de la Armada, y flotas, y Oficial de el Veedor.
17	Del Proveedor, y provision de las Armadas, y Flotas.
18	De el Pagador de las Armadas, y Flotas.
19	Del Tenedor de bastimentos de las Armadas, y Flotas.
20	De el Escrivano mayor de Armadas, y Escrivanos de Naos, y de Raciones.
21	De los Capitanes, Alferezes, Sargentos, y Soldados, y de las conductas, y aloxamientos.
22	Del Capitan general de la Artilleria, Artilleros mayor, y otros de las Armadas, y Flotas, artilleria, armas, y municiones.
23	De el Piloto mayor, y Cosmografos, y de los demás Pilotos de la Carrera de Indias, y Arraezes de Barcos de carga y su examen.
24	De los Maestres de Plata, y Navios, y de Raciones, y Xarcia.
25	De la Vniversidad de Mareante, y de los Marineros, y Pages de Navio.
26	De los passageros, y licencias para ir á las Indias, y bolver á estos Reynos.
27	De los estrangeros que passan á las Indias, y su composicion, y naturaleza, que en ellas pueden adquirir para tratar, y contratar.
28	De los fabricantes, y Calafates, fabricas, y aderezo de los Navios, y su arqueamiento.
29	De la xarcia.
30	De las Armadas, y Flotas.

31	Del aforamiento, y fletes.
32	Del apresto de las Armadas, y Flotas.
33	De los registros.
34	De la carga, y descarga de los Navios.
35	De la visita de Navios en estos Reynos, y en las Indias, y de los Guardas mayores, y otros.
36	De la navegacion, y viage de las Armadas, y Flotas.
37	De los Navios de aviso que se despachan á las Indias, y dellas á España.
38	De los Navios arribados, derrotados, y perdidos.
39	De los Asseguradores, riesgos, y seguros de la Carrera de Indias.
40	De los luezes Oficiales de Registros de las Indias de Canaria.
41	Del Comercio, y navegacion de las Islas de Canaria.
42	De la navegacion, y comercio de las Islas de Barlovento, y Provincias adjacentes, y de las permissiones.
43	De los Puertos.
44	De las Armadas de el Mar del Sur.
45	De la navegacion, y comercio de las Islas Filipinas, China, Nueva España, y Perú.
46	De los Consulados de Lima y Mexico.

